

[별표 17의2] <신설 2002.4.12, 2006.5.3>

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·절차 등(제48조의2제1항관련)

1. 검사시기

가.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

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를 월 1회 이상,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

나.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

- (1)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, 다만,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
- (2)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

2.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

가. 검사시료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(KS)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.

나. 시험방법

- (1)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(KS)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.
- (2)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.

3. 검사결과처리

가.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

- (1) 검사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,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2)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,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,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나.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

(1)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,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.

(2)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,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라.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그 밖의 사항

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